

AI 저작권 소송과 전망

이대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t-law@korea.ac.kr



서론

2025.11.7. 현재 AI 개발자(기업)에 대하여 제기된 저작권 소송은 미국에서만 59개인데, 전 세계적으로는 70여 개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¹ 이들 소송 중에서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6월 23일 및 25일 앤스로픽(Anthropic) 및 메타(Meta)의 AI 모델(Claude, Llama)을 학습시키는 것이 공정이용이라고 획기적인 첫 판결을 하였다.^{2,3} 앤스로픽 케이스는 ① AI 모델의 학습과 ② 학습데이터(central library)

¹ Chat GPT Is Eating the World, Updated Map of All U.S. Copyright Suits v. AI co. Total = 59 copyright suits (Nov. 7, 2025).

² Bartz v. Anthropic PBC, C 24-05417 WHA(N.D.Cal. 2025.6.23); Kadrey v. Meta Platforms, Inc., 23-cv-03417-VC(N.D. Cal. 2025.6.25).

³ AI 저작권 관련 소송에서 공정이용에 관하여 처음으로 판결한 것으로, Thomson Reuters Enterprise Centre GmbH v. ROSS Intelligence Inc. 케이스[765 F. Supp. 3d 382 (D. Del. 2025)]가 논의되고 있지만, 이 케이스는 생성형 AI에 관한 것이 아니다. 또한 DOE 1 et al v. GitHub et al 케이스(3:22-cv-06823-JST, N.C. Cal., May 11, 2023)는 권리관리정보 및 계약(오픈소스 이용허락) 위반 등에 관한 것이다.

구축으로 구분하고, 후자를 다시 ㉔ 해적 사이트에서의 다운로드와 ㉕ 구매한 인쇄본 서적의 디지털화로 구분하여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하였다. 앤스로픽 케이스는 학습과 인쇄본 서적의 디지털화가 공정이용이라고 판단하였으나 해적 사이트에서의 저작물 다운로드는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메타 케이스는 ① AI 모델 학습의 공정이용을 인정하면서, ② 그림자도서관(shadow library)⁴에서의 다운로드를 AI 모델 학습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의 측면에서 함께 판단하여야 한다면, 그림자도서관에서의 다운로드도 공정이용이라고 판시하였다. 양 케이스는 학습은 공정이용이라고 하였지만, 해적 사이트에서의 다운로드에 대하여 입장을 완전히 달리하고 있는 셈이다.



양 케이스는 작가(저작권자)들에 의한 집단소송으로 시작되었고 약식판결(summary judgment)의 형식으로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졌다.⁵ ‘약식판결’은 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종결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사실관계’에 관하여 ‘진정한 다툼’이 없고 따라서 법률적 판단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내리는 판결이다(연방민사소송규칙 §56). 앤스로픽 약식판결을 내린 이후 2025.7.17. 법원은 앤스로픽이 ‘그림자도서관’인 LibGen & PiLiMi에서 다운로드받은 서적의 저작권자들을 ‘집단(class)’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⁶ 해적 행위에 의한 복제물이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⁷ 앤스로픽의 복제가 고의적인지, 실제의 손해배상액이나 법정손해배상의 규모를 어떻게 정할지 향후 심리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지난 8월 25일 앤스로픽 케이스의 당사자들은 화해로 사건을 종결하기로 합의하고, 법원은 화해안을 예비승인함으로써 AI 저작권 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앤스로픽 및 메타 케이스와 앤스로픽 케이스의 화해에 의한 종결(예정)은 향후 다른 AI 저작권 소송과 한국에 대하여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⁸ 무엇보다도 이들 양 케이스가 현재 학습데이터와 많이 관련되어 있는 다른 저작권 소송 및 손해배상에 대하여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이들 양 케이스를 중심으로 AI 저작권 소송의 향후 방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⁴ 그림자도서관은 서적, 논문, 음악, 영화 등을 저작권 보호와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온라인 저장소이다. 메타 케이스는 그림자도서관이라는 단어를, 앤스로픽 케이스는 ‘해적 사이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단어 사용의 차이는 ‘학습을 위한 해적 사이트에서의 다운로드’가 공정이용인지 여부에 대하여 양 케이스의 입장을 잘 나타내고 있다.

⁵ 메타 케이스도 작가들의 집단소송으로 시작되었는데, 메타는 작가 Kadrey 등 13명을 대상으로 약식판결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였다. 이에 따라 이 판결의 효과는 13명의 작가에게 한정된다.

⁶ 이 소송은 ‘서적’의 저작권자들에 의한 집단소송으로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서적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원은 집단을 인정하는 판결을 통하여 ‘서적’을, ①출판 후 5년 이내, 그리고 ②앤스로픽이 다운로드하기 전에 또는 출판 후 3개월 이내에, 미국 Copyright Office에 등록된 저작물이라고 판시하였다. Bartz v. Anthropic PBC, Order on Class Certification (C 24-05417 WHA. N.D.Cal. 2025.7.17.).

⁷ 2025.6.23의 약식판결은 공정이용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것이지,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았다.

⁸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30건 이상의 소송이 제기되어 있으며, 한국에서는 2025.1.13. 한국방송협회가 네이버를 상대로 뉴스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이 있다.

앤스로픽 및 메타 케이스

양 케이스의 판단 대상 및 구조

앤스로픽 및 메타 케이스는 ① AI 학습데이터 구축과 ② AI 학습의 공정이용 여부에 대한 것이지만, 양 케이스가 대상을 달리하여 판단하고 있다. 앤스로픽의 학습데이터는 ㉞ 해적사이트(그림자도서관)에서 다운로드된 것과 ㉜ 인쇄본 서적을 디지털화에 의한 것이고, 메타의 학습데이터는 해적사이트에서 다운로드된 것만 언급하고 있다. 앤스로픽 케이스는 학습데이터 구축과 AI 학습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하였으나 메타 케이스는 다운로드와 AI 학습을 통합하여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앤스로픽 케이스는 ① 학습데이터 구축(㉞ 다운로드, ㉜ 디지털화)과 ② AI 학습을 대상으로, 메타 케이스는 다운로드와 학습을 통합하여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미국 저작권법은 공정이용을 판단하기 위한 요소로서 ① 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성격, ② 저작물의 성격, ③ 이용된 부분의 양과 상당성, ④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규정하고 있다.⁹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은 이러한 4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이루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첫째 및 넷째 요소이다.¹⁰ 공정이용의 첫 번째 요소는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이유나 이러한 이용의 성격을 묻는 것이다. 이는 ①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작성된 새로운 저작물이 단순히 원저작물의 대상을 대체(supersede)하는 것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② ‘추가적인 목적(further purpose)’이나 ‘다른 성격(different character)’을 가지는, 새로운 무엇인가(something new)를 추가하는가 여부가 핵심인데, 바로 이것이 변형적 이용을 의미한다.

	판단 대상		변형적 이용
앤스로픽	학습	개별 분석	○
	디지털화		○
	해적 행위		×
메타	다운로드 + 학습	통합 분석	○

AI 모델의 학습

앤스로픽 및 메타 케이스의 획기적인 판단은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이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앤스로픽 케이스는 LLM을 학습시키기 위한 저작물의 이용 목적과 성격이 “본질적으로(quintessentially) 변형적인 이용”이라고 판시하였다. 메타 케이스도 저작물의 이용은, 다양한 텍스트를 생성하고 광범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혁신적 도구인 LLM을 학습시키기 위한

⁹ §107. 한국 저작권법도 이와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다(제35조의5).

¹⁰ 따라서 이 글도 첫째 및 넷째 요소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것으로, “높은 수준의(highly) 변형적 이용”이라고 판시하였다.

앤스로픽 및 메타 케이스 모두 AI 모델의 상업적 성격을 인정하였지만, 상업적 성격이 첫째 요소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메타 케이스는 특히 저작물 이용이 매우 변형적인 경우에는 상업적 성격의 중요성이 떨어지므로, 첫째 요소에서 저작권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침해 결과물의 생성 여부

AI 모델의 암기(memorization)와 정보 역류(regurgitation)는 학습의 공정이용 여부와 AI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침해와 관계된다. 앤스로픽 케이스에서 저작권자들은 AI 결과물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암기는 변형적 이용과 관계없는 것이 된다. 또한 법원은 AI 모델이 암기를 하였더라도 창의적 요소나 스타일을 생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메타 케이스도 정보 역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¹¹

서적의 디지털화: 앤스로픽

앤스로픽은 수백만 권의 인쇄본 서적(원고 서적 포함)을 구매한 후, 이를 디지털 형태의 포맷으로 변경하여 라이브러리를 구축하였다. 스캐닝을 하면서 원저작물(인쇄본)은 파기되었고,¹² 디지털본을 제3자에게 제공하지도 않았다. 법원은 포맷 변경이 용이한 저장과 검색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변형적 이용이라고 판시하였다.

법원의 판시는 AI 학습을 위하여 1부의 저작물만 구매하면 충분하다는 것으로 AI 학습과 같이 독자와 출판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부담을 면제한 것이다. 법원은 AI 학습을 독자가 연구할 권리와 같이 파악하였고, 법원의 판시는 최초판매의 원칙을 적용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

해적 사이트에서의 다운로드

일반적으로 해적 사이트로부터의 저작물 다운로드는 당연히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만, ‘AI 학습을 목적으로 다운로드받는 행위’가 공정이용이 되는지가 문제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양 케이스가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앤스로픽 케이스에서 법원은 “해적 사이트로부터 교재를 복제한 자는 이미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라고 하면서 변형적 이용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매우 강한 어조로 판시하고 있다. 심지어 복제

¹¹ 학습데이터를 역류시키기 위한 의도로 프롬프트를 입력(적대적 프롬프트 입력)하더라도 Llama는 서적의 단어 50개를 초과하여 생성하지 않았다.

¹² 앤스로픽이 서적을 디지털화한 이후 파기한 것은 변형적 이용 판단에 다소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파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학습의 공정이용 여부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다.

이후 LLM 학습을 위하여 보관·이용하더라도 변형적 이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메타 케이스는 “다운로드는 궁극적인 목적인 AI 모델의 학습이 매우 변형적이라는 목적에서 고려되어야” 하고, “서적을 이용한 궁극적인 목적이 변형적이므로 서적의 다운로드도 변형적”이라고 판시하였다. 메타 케이스는 해적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받은 것 중에서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복제물’에 대해서도 변형적 이용을 인정하였다. 곧 모든 복제물은 LLM 학습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일부분이 학습데이터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도 “공정이용은 저작물의 2차적 이용자가 최대한 적은 숫자의 복제물을 이용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시장에 대한 영향

공정이용의 넷째 요소를 분석함에 있어서도 앤스로픽 케이스는 ① 학습데이터 구축(다운로드 및 서적의 디지털화)과 ② 학습을 분리하여 판단하였으나 메타 케이스는 양자를 통합하여 판단하였다. 앤스로픽 케이스는 해적 복제물의 다운로드가 서적 시장에 대한 수요를 대체한다고 단호하게 판시하고, 서적의 디지털화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양 케이스는 학습과 관련하여서는 ㉔ 동일 또는 상당히 유사한 결과물의 생성(정보 역류), ㉕ 경쟁 결과물의 생성(시장 희석), ㉖ 이용허락 시장을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다. 양 케이스에서 침해 결과물의 생성(동일 또는 상당히 유사한 결과물의 생성)(㉔)은 문제되지 않았고, 나머지 2개의 시장(㉕, ㉖)이 문제되므로 이 2개의 시장에 대한 영향을 고찰해보자.

		분석 대상	변형적 이용	
앤스로픽	개별 분석	학습	동일 결과물(침해 결과물)	×
			경쟁 결과물	×
			이용허락 시장	×
	디지털화	중립		
	다운로드	○		
메타	통합 분석	다운로드+학습	정보 역류(침해 결과물)	×
			이용허락 시장	×
			시장 희석	X(가능성 존재, 입증 X)

• 이용허락 시장

저작권자들은 그동안 LLM 학습에 의하여 ‘학습을 위한 이용허락 시장’이 대체된다거나 대체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으나,¹³ 앤스로픽 및 메타 케이스 모두 이러한 주장을 배척하였다. 앤스로픽 케이스는, 이용허락

¹³ 이에 대하여 상세한 것은 USCO, 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Part 3: Generative AI Training 32 (Report of the Register of Copyrights, May 2025), IV, D, 3 참조.

시장이 발달할 수 있더라도, 저작자가 이용할 권리가 있는 시장이 아니라고 하였고, 메타 케이스는 이용허락 시장이 ‘이론적 시장(theoretical market)’으로서 저작권자가 독점할 권리는 없다고 하였다.

양 케이스에서의 쟁점은 이용허락 시장이 LLM 학습에 의하여 손상될 수 있는 ‘잠재적 시장(potential market)’이 될 수 있는가 여부이다. 잠재적 시장의 정의와 범위 설정은 공정이용의 넷째 요소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데, 양 케이스는 모두 ‘순환 논리’를 배제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순환논리’란 논리적 논증에서 특정한 주장을 하면서 그 주장의 근거로 다시 그 주장을 사용하는 오류, 곧 논리의 출발점과 도착점이 동일하여 자기 자신이 자신 스스로를 증명하여 설득력이 없어지는 오류를 의미한다.

순환논리의 배제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잠재적 시장 설정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영향받을 수 있는 시장으로는 실제 존재하거나(actual market), 진출을 위한 의사나 계획이 있거나, 이용허락 요청이 거절되었거나, 저작권자가 진출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성격상 이용허락하려 하지 않는 시장(패러디) 등 매우 다양한 시장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시장을 모두 넷째 요소의 시장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공정이용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곧 “공정이용 케이스에서는,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이용하였기 때문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사용료를 항상 상실”하게 된다. 요컨대 저작권자가 “사용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하여 시장에 대한 영향을 인정하면, 공정이용 판단은 항상 저작권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공정이용이 인정될 여지가 없게 된다.

• 시장 희석

앤스로픽 케이스는 LLM에 의하여 저작물과 경쟁하는 결과물이 폭발적으로 생성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법원은, 이 주장이 학생들의 작문 학습에 의하여 원저작물과 경쟁하는 저작물이 폭발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서, 이러한 경쟁은 저작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학습은 오히려 창작을 증진한다고 판시하였다. 앤스로픽 케이스의 이러한 논의는 메타 케이스가 논의하는 ‘시장 희석’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메타 케이스에서 법원은 ‘시장 희석’을 상세하게 논의하면서 AI에 의하여 서적 시장이 희석될 수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넷째 요소가 공정이용이 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당사자들이 ‘약식판결’을 청구하였고 원고가 증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



화해에 의한 소송 종결 예정: 앤스로픽

화해안 확정 절차

앤스로픽 케이스의 당사자들은 화해에 의하여 사건을 종결하기로 합의하고 2025.9.25. 법원이 화해안을 예비적으로 승인하였고, 현재 최종 승인을 위한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앤스로픽 케이스는 화해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의 집단소송 화해는 연방민사소송규칙(FRCP)에 규율되는데(§23(e)), 법원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다.

화해안의 내용

• 15억 달러의 화해 기금

앤스로픽은 최소 15억 달러를 4회에 걸쳐 ‘화해 기금’에 납입하는데, 이 금액은 저작권 침해 역사상 최대의 화해 액수이다.¹⁴ 저작물의 숫자가 50만 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저작물 당 3천 달러가 추가되고, 항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자까지 포함하여 지급되므로, 15억 달러는 최소한의 액수가 된다. 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과거’에 이루어진 저작물의 토렌트, 스캐닝, 보유 및 이용에 대한 청구에 한정되고, AI 결과물 생성에는 미치지 않으며, 저작물 목록(Works List)¹⁵에 있는 것에 한정된다.

• 집단

저작권자 집단은 앤스로픽이 LibGen & PiLiMi에서 다운로드받은 서적의 저작권자들¹⁶이므로 ‘저작물 목록’에 있는 저작물에 한정된다. 법원은 2025.7.17. 판결에서 ‘서적’을, ① 출판 후 5년 이내, 그리고 ② ㉠ 앤스로픽이 다운로드하기 전에 또는 출판 후 3개월 이내에, 미국 Copyright Office에 등록한 저작물 이라고 판시하였다. 2025.9.1. 앤스로픽이 제시한 숫자는 46.5만 권인데,¹⁷ 당사자들은 2025.10.25.까지 저작물 목록에 포함될 저작물을 제시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¹⁴ 과거 Oracel Corp. v. SAP AG 케이스(9th Cir. 2014)에서 13억 달러라는 최대 배상 판결이 이루어졌지만, 이후 3.567억 달러로 감액된 적이 있다.

¹⁵ 저작물 명칭, 출판자, ISBN/ASIN, 저작권 등록번호 등을 포함하는 저작물 목록. 양 당사자들이 검토하여 저작물 목록을 최종 확정.

¹⁶ 집단에는 저작권자 및 출판사가 포함되는데, 법원은 집단을 인증하는 판결에서 저작권자들을 복제권의 법적 또는 수익적 소유자라고 하였다. 저작자가 출판사에 배타적 출판권을 부여한 출판계약을 한 경우에는 출판사가 법적 소유자가 되고, 저작자는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가 된다.

¹⁷ 앤스로픽이 다운로드받은 700만 권의 서적에 비하여 46.5만 권으로 조사된 것은 중복, 외국서적 포함, 저작권 등록, ISBN/ASIN, 5년 이내 등록 등 여러 요건에 의한 결과이다.

• 복제물의 파기

앤스로픽은 ① LibGen or PiLiMi에서 다운로드받은 저작물 파일과 ② 토렌트로 다운로드받은 복제물에서 파생하는 모든 복제물을 파기한다.

• 화해 기금의 할당

집단에 포함되는 모든 저작물은 동등하게 취급되고, 각 저작물에 대해서는 화해 기금에서 동일한 비율의 액수가 할당되는데, 이러한 액수는 법정손해배상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각 저작물에는 전체 화해 기금(변호사 비용 등 공제)을 전체 저작물 숫자로 나눈 액수가 할당되는데, 3천 달러이다.

결어

앤스로픽 및 메타 케이스와 앤스로픽 화해는 AI 저작권 소송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다. 첫째, 양 케이스 모두 AI 학습을 공정이용이라고 판시한 것은 AI 저작권 소송에서 중요한 지침이 된다. 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공정이용의 원리를 통하여, 새로운 기술을 사회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법원의 진보적인 접근방법을 나타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본질적으로 변형적인 이용’이라거나 ‘높은 수준의 변형적 이용’이라고 함으로써, AI 학습의 변형적 이용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 비록 1심에 불과하지만, 법원에 계류 중인 다른 AI 저작권 소송은 물론이고, 공정이용 규정이 있는 한국에 대해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양 케이스는 1심 판결에 불과하고, 사실관계에 따라 공정이용 여부는 얼마든지 달리 판단될 수 있다. New York Times 케이스는 OpenAI가 New York Times의 저작물(신문 기사)을 그대로(verbatim) 결과물로 제공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¹⁸ 이것이 사실이라면 공정이용의 요소인 변형적 이용과 시장에 대한 영향에 대한 판단이 앤스로픽 및 메타 케이스와 달라질 가능성이 많다. 또한 메타 케이스에서 법원은 시장이 희석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으나 저작권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여 공정이용의 넷째 요소가 부인되었으므로, 향후 이를 입증한다면 넷째 요소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메타 케이스는 집단 중 13명에 대한 판단이므로, 13명을 제외한 나머지 저작권자나 다른 소송에서의 저작권자들이 이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는 상당히 흥미 있는 요소로 남게 된다.

¹⁸ New York Times는 예컨대 2012년에 게재된 기사의 일부(353개 단어로 구성)의 경우 5개만 제외하고 모두 동일하다고 주장하였다. The NYT v. MS Corp. et al. (1:23-cv-11195) Complaint 참조.

셋째, AI 학습을 위하여 해적 사이트로부터 저작물을 다운로드받는 것이 공정이용이 되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양 케이스가 이에 대하여 상반된 판정을 하였는데, AI 개발사들이 인터넷상에서의 다운로드를 활용하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넷째, 앤스로픽 및 메타 케이스의 결론은 같지만 해적 복제물과 시장 희석에 대하여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양 케이스의 차이는 학습과 해적 행위를 개별적 또는 통합적으로 분석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해적 사이트에서의 다운로드는 저작권 침해로 인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형적 이용에 해당한다는 메타 케이스의 판시는 획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저작권자들의 강력한 반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앤스로픽 및 메타 케이스는 이용허락 시장을 배척하였으나, 저작권자들이 이러한 시장의 존재를 강력하게 주장해 왔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른 법원이나 상급심이 달리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여섯째, 앤스로픽 케이스는 인쇄 출판물을 디지털 포맷으로 변경(스캔 이후 폐기)하여 학습데이터로 사용한 것은 공정이용이라고 함으로써, 포맷 변경은 저작권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앤스로픽 케이스의 화해안에서 제시된 다운로드된 책 1권당 3,000달러가 향후 AI 학습 관련 손해배상의 표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당사자들은 저작권자 및 앤스로픽 양자가 법적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소송이 계속 진행되어 해적판 다운로드가 저작권 침해라고 확정되는 경우, 앤스로픽은 46만 5천여 권의 저작물에 대하여 법정손해배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미국 저작권법상 법정손해배상액은 저작물 당 750달러와 3만 달러 사이에서 인정되는데, 고의에 의한 저작권 침해에는 최대 액수가 15만 달러까지 될 수도 있다(\$504(c)). 46만 5천여 권의 서적에 대한 법정손해배상은 앤스로픽에게 상당히 부담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3천 달러는 다른 어떤 사건의 화해나 손해배상보다 높은 액수이므로 저작권자에게도 합리적일 수 있는 액수이다.

아직 미국에서는 많은 숫자의 AI 저작권 소송이 계류 중이고, 메타 및 앤스로픽 케이스와 사실관계를 달리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들 양 케이스와 화해안이 다른 사건들과 한국에서의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다만 한국에서 제기된 AI 저작권 소송이 1개에 불과하고 소송에서 공정이용 여부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미국 판결의 영향은 소송보다는 실무나 입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곧 미국의 저작권 관련 판결이 그동안 한국에 미친 영향을 고려한다면, 이 분야의 커뮤니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